

구미도시공사 정관 개정 보고



구 미 시

구미도시공사 정관 개정 보고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2025. 7. .
제출자 : 구미시장

1. 보고이유

상위법인 「지방공기업법」과 상이한 임·직원 결격사유 조항을 「지방공기업법」 제60조와 일치하도록 정비한 「구미도시공사 정관 일부개정안」을 인가하였기에 「구미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제7조제4항에 따라 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임.

2. 주요내용

가. 임·직원 결격사유

- (1) 임·직원의 결격사유 명시(제17조제1항)
- (2) 임원의 결격사유 해당 또는 판명 시 당연퇴직(제17조제2항)
- (3) 직원의 결격사유 해당 또는 판명 시 당연퇴직(제17조제3항)
- (4) 퇴직 전 관여 행위의 효력 유지(제17조제4항)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1) 「지방공기업법」 제58조, 제60조
- (2) 「지방공무원법」 제31조
- (3) 「구미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제7조

나. 추진절차

- (1) 구미도시공사 이사회 의결(2025. 6. 12.)
- (2) 구미시장 인가(2025. 6. 19.)

다. 구미도시공사 정관 일부개정안(붙임)

구미도시공사 정관 일부개정(안)

구미도시공사 정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임·직원의 결격사유) 전문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임·직원의 결격사유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사의 임원이 될 수 없으며,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사의 직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2.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지방공기업법」 제58조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지방공기업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 공사의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제2호는 제외한다) 및 「지방공무원법」 제61조제1호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하였음이 판명되었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③ 공사의 직원이 「지방공무원법」 제61조제1호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용 당시 그에 해당하였음이 판명되었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④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퇴직한 임직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인가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u>제17조(임·직원의 결격사유)</u>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직원이 될 수 없다.</u> <u>1. 피성년후견인,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u> <u>2.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u> <u>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u> <u>4.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u> <u>5. 공무원 및 정부, 지방투자기관에서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u> <u>6.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u> <u>7.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u> <u>8. 공사와 거래상 밀접한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u>	<u>제17조(임·직원의 결격사유 등)</u> <u>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사의 임원이 될 수 없으며,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사의 직원이 될 수 없다.</u> <u>1. 미성년자</u> <u>2.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u> <u>3. 「지방공기업법」 제58조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u> <u>4. 「지방공기업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u> <u>② 공사의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제2호는 제외한다) 및 「지방공무원법」 제61조제1호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하였음이 판명되었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u> <u>③ 공사의 직원이 「지방공무원법」 제61조제1호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용 당시 그에 해당하였음이 판명되었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u> <u>④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퇴</u>

9. 법 제58조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0.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1.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직한 임직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관계법령

□ 「지방공기업법」

제58조(임원의 임면 등) ①~③ 생략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장의 경영성과에 따라 임기 중에 해임하거나 임기가 끝나더라도 임원추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임시킬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제58조의2에 따른 경영성과계약의 이행실적
2. 제7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경영평가의 결과
3. 제78조제4항에 따른 사장의 업무성과 평가 결과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사장을 임기 중에 해임할 수 있다.

1. 제78조의2제3항에 의한 경영 개선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그 밖에 업무 수행 중 관계 법령을 중대하고 명백하게 위반한 경우

⑥ 생략

제60조(임직원의 결격사유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사의 임원이 될 수 없으며,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사의 직원이 될 수 없다.

1. 삭제 <2019. 12. 3.>
2. 미성년자
3.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4. 제58조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삭제 <2015. 12. 15.>

- ② 공사의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제3호는 제외한다) 및 「지방공무원법」 제61조제1호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하였음이 판명되었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 ③ 공사의 직원이 「지방공무원법」 제61조제1호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용 당시 그에 해당하였음이 판명되었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 ④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퇴직한 임직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격사유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에 한정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경찰청장에게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하여 공사에 제공할 수 있다.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61조(당연퇴직)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1. 제31조제2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2부터 제6호의4까지, 제7호 및 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제31조제2호는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청기한 내에 면책신청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면책불허가 결정 또는 면책 취소가 확정된 경우만 해당하고, 제31조제5호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제3호,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2.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이 만료된 경우

□ 「구미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제7조(정관) ①~② 생략

③ 공사의 정관은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④ 정관의 제·개정 시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소 관 부 서		예산재정과
입 안 자	과 장	조 민 규
	팀 장	이 현 경
	담 당 자	남 혜 란 (480-2553)